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가”군)



2019. 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입학전형 일정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지원서 접수 (인터넷)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구비서류 제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9. 9. 30.(월) ~ 10. 7.(월)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한 평일 10:00 ~ 17: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15동 206호 교무행정실)	2019.10.4.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특별전형	면접 대상자 발표	2019. 10. 25.(금) 18:00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개별통지 없음
	면접 및 구술고사	2019. 10. 28.(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2019. 11. 6.(수) 18:00 이후	입학본부 홈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개별통지 없음
일반전형	면접 대상자 발표	2019. 11. 6.(수) 18:00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개별통지 없음
	면접 및 구술고사	2019. 11. 9.(토)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2019. 12. 3.(화) 18:00 이후	입학본부 홈페이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개별통지 없음	
합격자 등록	2020. 1. 2.(목) ~ 1. 3.(금)			
1차 추가합격자 발표(결원 시)	2020. 1. 7.(화)			
1차 추가합격자 등록	2020. 1. 9.(목) ~ 1. 10.(금)			
2차 추가합격자 발표(결원 시)	2020. 1 ~ 2월 중		추후 공고	

※ 전형 일정 및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1) 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2019. 10. 4.(금) 18:00까지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됨
- 2) 지원서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부담함
- 3)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면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수정, 접수 취소, 전형료 환불이 불가함
- 4) 지원서 접수 이후 지원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기간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결격 처리됨. 직접 방문할 경우 2019. 10. 7.(월) 17:00까지 서류가 접수장소(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입시서류 접수창구)에 제출되어야 하고,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2019. 10. 4.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5)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학 후 학사관리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이후에 관한 사항

- 1) 지원 당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졸업증명서를 2020. 3. 2.(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 외국 대학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 을 2020. 3. 2.(월)까지 제출해야 함(2020년 3월에 졸업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는 2020. 4. 1.(수)까지 제출)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 정보는 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참고
 - 중국 대학 졸업자의 경우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에 대하여 번역 공증하여 제출(<http://www.cdgd.edu.cn> 참고)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또는 공인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을 첨부해야 함
- 2) 합격자로서 2020년 2월(3월에 졸업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허가)을 취소함
- 3) 입학 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할 수 없으며,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 일반적인 사항

- 1) 지원자는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의 공고 또는 게시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 2)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같은 군에 속하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금지사항 기재, 필수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 또는 입학(허가)을 취소하며 향후 본 법학전문대학원 및 서울대학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는 결격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되며,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됨
 - 4)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인원의 숫자와 무관하게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5)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6) 모집안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학칙 및 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 시행함
 - 7) 모집안내에 기재되지 않은 기타 입학 관련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02-880-7539)로 문의하기 바람

< 차례 >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2. 지원자격	1
가. 일반전형	1
나. 특별전형	2
3. 전형방법	2
가. 전형요소, 배점 및 선발방법	2
나. 선발방법 및 절차	3
4. 지원서 접수	4
5. 제출서류	5
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 제출 서류	5
나.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	7
다. 체크리스트	9
6.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1
7. 추가합격자 선발	11
8. 입학전형료 반환	11
9. 이의신청	12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위과정	모집단위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 고
전문석사	법학과	일반전형	139명 이내	총 입학 정원에서 특별전형 합격자 수를 제외한 인원
		특별전형	11명 이상	총 입학 정원(150명)의 7% 이상

※ 각 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9학년도 각 전형에서 발생한 결원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0년 2월(3월에 졸업하는 외국 대학 졸업자는 3월)에 취득 예정인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9. 10. 4.) 기준 1년 이내에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한 자
- 3)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에서 아래의 성적을 취득한 자

구 분		점 수	비 고
TEPS	개정 전 (990점 만점)	701점 이상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하여,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유효함. 단, TEPS는 제239회(2017. 10. 21.)~제272회(2019. 9. 21.) 정기시험의 성적까지 유효함.
	개정 후 (600점 만점)	387점 이상	
TOEFL	IBT	99점 이상	
	PBT	597점 이상	

※ 영어권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이상(LL.M., MBA 등 포함)을 취득한 자는 TEPS 또는 TOEFL 성적 제출을 면제함

※ 금년 입학전형에서는 TOEFL MyBest Scores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 회차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Test Date Scores)를 제출해야 함

나.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 대상자(단, TEPS 및 TOEFL 성적을 제출하되 지원자격에 점수 제한이 없음) 중 아래 1)~8)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장애인(1급~6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에 의해 장애인 등록(1급~6급)이 되어있는 자
- 2)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그의 가구원, 동법 제2조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가구원

○ 차상위계층 인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에 속한 자
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속한 자

- 3) 농·어촌지역출신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중·고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제외)에서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4)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5)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녀
- 6)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7)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8)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해 의상자로 인정된 자

3 |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

※ 1단계 전형의 실질반영률은 괄호 안과 같음

정량 및 정성평가 (1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 (2단계)	총점
법학적성시험	60점 (30%)	50점	250점
학업성적	60점 (30%)		
정성평가	80점 (40%)		
		200점	

1) **법학적성시험**: [(언어이해영역 백분위) × 0.4 + (추리논증영역 백분위) × 0.6] × 0.6

※ 논술영역은 정성평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됨

2) **학업성적**: (학사학위 수여대학의 성적표에 기재된 평점 평균의 백점 환산점수) × 0.6

※ 둘 이상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공동학위제 포함) 지원자가 선택한 학사과정의 평점 평균을 반영하며, 편입학한 경우에는 전적 대학 성적을 이수 학점 수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점수를 반영함. 단, 학사 편입학한 자가 성적반영 대학으로 전적 대학을 선택할 경우, 전적 대학 성적만 반영함

3) **정성평가**: 법학적성시험, 대학 성적,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를 기초로 다음 항목을 평가함

※ 연구, 학습, 사회활동, 경력은 대학 입학 이후의 것만 평가함

● **학업 능력과 태도 (40점)**

- 대학 입학 이후 성취한 학업 경험의 깊이와 다양성,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업 태도 등을 고려
- 이수 교과목의 깊이와 다양성, 학년별 이수 추이, 재수강 과목 등을 고려
- 외국어 능력(한자 포함)이 매우 우수한 경우 언어 습득과정과 활용 경험 등을 고려

●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발전 가능성 (40점)**

- 가치관의 공공성, 지도자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
- 협력과 갈등 해결의 경험 등을 고려
-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의 다양성과 적극성 등을 고려

4) **면접 및 구술고사**는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며, 단순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

나. **선발방법 및 절차** : 관련 법령, 학칙 및 규정, 사정원칙에 따라 선발

1) **특별전형**

가) 1단계 성적이 높은 순으로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면접 및 구술고사 대상자로 선발함

나) 1단계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단,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입학생의 비율을 특별전형 선발 예정 인원의 30% 이상으로 함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다) 특별전형에서 불합격한 특별전형 지원자가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영어 성적을 가진 경우 별도의 지원 절차 없이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함. 단, 특별전형 결격자는 제외함

2) 일반전형

- 가) 1단계 성적이 높은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면접 및 구술고사 대상으로 선발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1.5배수를 초과할 수 있음
- 나) 1단계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3) 비법학사 선발 :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은 비(非)법학사를 선발함

- ※ 지원자가 법학사를 포함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한 경우 주전공, 부전공 등의 전공 종류와 상관없이 비법학사로 인정됨.

4)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선발 :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은 서울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선발함

- ※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의 경우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5) 동점자 처리기준 : 가) ~ 다) 순으로 적용

- 가)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이 상위인 자
- 나) 정성평가 성적이 상위인 자
- 다) 학부 학업성적이 상위인 자

4

지원서 접수

가. 일 시 : 2019. 9. 30.(월) 09:00 ~ 10. 4.(금) 18:00

나. 전형료 : 150,000원

- ※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 ※ 특별전형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전형료(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 포함)를 면제함
- ※ 특별전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제외) 1단계에서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50,000원, 일반전형 1단계에서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20,000원을 원서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 계좌로 환불

다. 접수방법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http://admission.snu.ac.kr>)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공통 제출 서류 : ○ 모든 지원자 제출 필수, △ 해당자 제출 필수
 ※ 제출 서류의 부수 등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바. 유의사항' (8쪽)을 반드시 확인

제출서류	일반전형	특별전형
1. 입학지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반드시 컬러로 출력, 서명 필수)	○	○
2. 학사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¹⁾ 와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및 여름 계절학기 성적까지 포함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예정증명서	○	○
* 편입학 경력이 있는 지원자는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¹	△	△
* 외국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²⁾ 학점체계(성적평점 환산기준 포함), 해당 학교 학점체계에 대한 지원자의 설명서(자유양식), 성적환산증명서(지정기관에서 발급), 학력조회동의서 제출; 최종 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영사확인을 추가 제출해야 함 ³⁾	△	△
3.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	○
4. TEPS 또는 TOEFL 성적증명서(소정 기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5. 자기소개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⁴⁾	○	○
6.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휴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포함)이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대학원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1학기 휴학 등으로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제출서류 8번의 학적부로 대체함	△	△
7.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목록'에 기재한 서류 ⁵⁾ - 연구, 학습, 사회활동,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 영어 이외 제2외국어능력시험 관련 증빙서류(취득 기간 제한 없음)	△	△
8. 재학(휴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포함)/졸업한 모든 대학 및 대학원 학적부 사본(발급담당자 원본대조확인필) ⁶⁾	○	○
* 외국대학의 경우 학적부 대체확인서(징벌사항 확인) 제출 ⁷⁾	△	△

1) 총 이수 학점, 평점 평균, 평점 만점, 백점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백점 환산점수 미제출자는 본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성적을 반영함
 ※ 복수학위 취득자는 모든 학부의 성적증명서 및 학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

2) 외국 대학 출신자 참고사항

- ①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성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출신 대학에서 직접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 ② 학력조회동의서: 학력조회동의는 서울대학교가 외국대학(원)으로 시행하는 학력조회에 동의하는 절차로 인터넷 지원서 작성 시 학력조회에 관한 사항을 입력 (별도의 학력조회동의서 제출 불필요)
- ③ 성적환산증명서 제출대상 및 발급/제출방법
 - 제출대상: 학부 성적이 4.0/4.3/4.5/5.0 등의 평점 평균(GPA)으로 표시되지 않는 영국 등 일부 외국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지원자
 - 발급/제출방법: 아래의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여 백점환산점수 체계 또는 4.3 만점 체계로 환산된 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연번	기관명	증명서 종류	홈페이지
1	World Education Services (WES)	Course-by-Course (with GPA&course-levels)	http://www.wes.org/
2	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 (ECE)	Course-by-Course	https://www.ece.org/
3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IERF)	Detail Report	http://www.ierf.org/

3) <지원자 유의사항> ‘나. 합격자 발표 이후에 관한 사항’ 중 1)항 참조

4)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및 제출 서류 삭제사항

- ①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성명,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 직장, 직종(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다만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단순 직종명은 기재할 수 있음.
- ② 학적부 등 제출 서류에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제출해야 함. 다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예외로 함

※ 위 ① 또는 ②를 위반한 경우 평가과정에서 결격되거나 합격 또는 입학(허가)이 취소될 수 있음

5)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방법

- ①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는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내용과 관련된 것에 한함
 - ② 증빙서류 목록에는 10개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여러 개별 활동을 하나의 증빙서류 항목으로 통합하여 기재하는 것(예: 다양한 봉사활동 증명서를 ‘봉사활동 증명서’ 항목으로 통합하여 기재)은 금지함
 - ③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외한 ‘공통서류’는 증빙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④ 증빙서류 목록의 각 항목은 A4용지 5면(단면 출력기준으로 모아찍기 금지) 이내로 제출
 - ⑤ 서면 형태가 아닌 증빙자료(예: 비디오테이프, CD 등)는 접수하지 않음
 - ⑥ 원본대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한 후 제출처에서 원본대조확인을 받아야 함
 - ⑦ 인적사항 및 본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 혹은 기록에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바. 유의사항 참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어떠한 표기(색지, 메모 부착 등)도 하지 않아야 함
 - ⑧ 스테이플 사용 금지. 클립, 집게 등을 활용하여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제출
- 6)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또는 서울대학교에서 발급받은 경우, 그 밖에 원본대조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받지 않아도 됨
- 7) 학적부 대체확인서는 교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 작성 요청해야 함

나.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

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등
신체적 배려 대상	장애인 (1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6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적 배려 대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읍·면·동 주민센터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margin-right: 5px;">차상위 계층</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복지 급여 수급자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5px;"> <div style="writing-mode: vertical-rl; margin-right: 5px;">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자')</div> </div> </div>	<p><공통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p><추가서류> 해당 서류만 제출(담당자 연락처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적 배려 대상	농·어촌지역 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학력인정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통일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보훈처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또는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 한해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보훈처
	다문화가족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관계증명서(부모)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읍·면·동 주민센터
	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자 증명서(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보건복지부

※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는 2019. 8. 1.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단,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는 2019. 9. 18.자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기타 특별전형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다. 제출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 02-880-7539)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206호 교무행정실)

라. 제출 기간 : 2019. 9. 30.(월) ~ 10. 7.(월) 중 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10:00~17:00

마. 제출 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발송

바. 유의사항

- 1) 위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정리한 후 체크리스트(9-10쪽)와 함께 제출
- 2)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2019. 8. 1. 이후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통서류 중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7번서류)’에 한하여 제출처에서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3) 입학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되, 원본에 개인식별정보(성명, 사진, 학번, 생년월일,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인적사항 정보가 담긴 QR코드, 보호자 성명 및 주소 등)가 기재된 경우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사본은 개인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검정색 음영처리 후 서류 상단에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입학지원서는 1부, 성적증명서는 3부 제출

※ 지원서류별 제출 방법

구분	원본	사본	비고
	(개인식별정보 노란색 형광펜 표시)	(개인식별정보 검정색 음영 처리 및 수험번호 기재)	
입학지원서	1부	-	노란색 형광펜 표시 불필요
학부성적표	2부	1부	총 3부 제출
자기소개서	1부	1부	출신학교명(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명 등 포함)도 개인식별정보와 동일하게 처리
기타서류	1부	1부	성적표, 학적부,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등 그 외 모든 제출 서류

- 4)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제2외국어 성적표 제외)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또는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을 첨부해야 함
- 5) 추천서는 접수하지 않음
- 6)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소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함

체크리스트

※ 아래 순서대로 제출서류를 정리하여, 제출한 서류에는 O 표시, 해당없는 서류에는 - 표시하여 제출 (원본 및 사본은 각각 하나의 클립으로 묶어서 분리 제출)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 _____ 수험 번호 : _____
 전형구분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입학지원서	
2. 학사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 외국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학점체계, 학점취득에 대한 설명서(자유양식), 성적환산증명서(해당자)	
3.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4. TEPS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5. 자기소개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한 것에 한함)	
6. 대학원에 재학한 사실(휴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포함)이 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대학원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1학기 휴학 등으로 성적증명서 발급이 불가()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여 제출서류 8번의 학적부 제출로 대체	해당하는 곳에 √ 표기
7.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8. 재학(휴학, 자퇴, 제적 등의 경우 포함)/졸업한 모든 대학 및 대학원 학적부	
* 외국대학의 경우 학적부 대체확인서(징벌사항 확인)	
9.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서류(아래 참조)	

지원자격		특별전형 제출서류	제출여부
장애인 (1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6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기초생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차 상 위 계 층	복지 급여 수급자	<p><공통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자')	<p><추가서류> 해당 서류만 제출(담당자 연락처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농·어촌지역 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학력인정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독립유공자의 본인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또는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에 한해 본인이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다문화가족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상자 증명서(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 자기확인서(소정 양식) 	

6**합격자 발표 및 등록****가. 일 시**

- 특별전형 : 2019. 11. 6.(수) 18:00 이후
- 일반전형 : 2019. 12. 3.(화) 18:00 이후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에서 발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입학>대학원공지사항>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로 검색)

다. 합격증 교부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에서 출력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입학>대학원공지사항>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로 검색)
※ 지원결과에 대한 개별통지는 없으며, 합격증은 합격자 발표 기간에만 출력이 가능함

라. 합격자 등록 : 2020. 1. 2.(목) ~ 1. 3.(금)

※ 해당 기간 내에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7**추가합격자 선발****가. 예비합격자 선발**

모집인원 40% 이내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발하며,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나. 추가합격자 선발 및 통지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의 순위에 따라 전화로 개별 통지(전화 녹음)하여, 본인의 등록 의사를 확인한 후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예비합격자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부담함)

8**입학전형료 반환**

가. 입학전형료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나. 본인의 귀책이 아닌 위 1)~4)항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학전형료 반환신청서 : <별첨>

9

이의신청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학전문대학원 공정입시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사정원칙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공정입시관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함